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289 발의연월일: 2023. 4. 12.

발 의 자:도종환·김용민·서동용

김영호 · 신동근 · 강득구

김정호 · 김철민 · 권칠승

김성환 • 박 정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지체 없이 피해학생을 분리하고, 심리상담・일시 보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가해학생 의 긴급한 선도를 위하여 접촉 금지・교내봉사・심리치료・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진행으로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및 조치 이행이 지연되고,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학생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, 학교생활 및 수업의 기본 단위인학급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필요한 치료도 신속히 진행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피해학생의 치료·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4항 전단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호, 제2호"를 "제1호부터 제4호까지"로 한다.

제17조제4항 전단 중 "제5호 및 제6호"를 "제5호부터 제7호까지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의 장의 긴급 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① 심의	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①
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	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	
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동	
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	
다)를 할 것을 교육장(교육장이	
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	
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	
다. 이하 같다)에게 요청할 수	
있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학교	<u>.</u>
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	
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	
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(교사를	
포함한다)와 피해학생을 분리	
하여야 하며, 피해학생이 긴급	
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<u>제1</u>	<u>제1호부</u>
호,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	<u>터 제4호까지</u>
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	
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	
여야 한다.	

- 1. ~ 6. (생략)
- ② ~ ⑧ (생 략)
- 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 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
  - ~ ③ (생 략)
  -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 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 를 할 수 있으며, 제5호와 제6 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 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 다.
  - ⑤ ~ ⑫ (생 략)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- - ~ ③ (현행과 같음)

  - -----제5호부터 제7호까지--

  - ⑤ ~ ⑫ (현행과 같음)